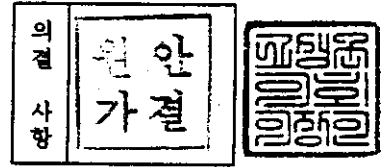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93 호
의결년월일	1995. 7. 21. (제 35 회)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1995. 7. 2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양질의 대민봉사행정추진을 위해 유사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를 통합 함에 따라 관계규정 개정

2. 주요골자

-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함.

3.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내지 제20조를 제11조내지 제19조로 한다.

제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 구호, 후생, 원호 관련업무
2.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3. 의료시혜
4.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5.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6. 노인·부녀·아동복지 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
7. 노인·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8. 여성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9. 부녀자의 직업보도
10. 운락여성의 선도보호
11. 부녀아동 상담 및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
12. 부랑아 방지

13. 교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14. 노인복지대책 및 증진
15. 가정의례준칙 지도
16.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7. 자원봉사자 센터운영
18.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실과의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u>사회과</u> 환경보호과, <u>가정복지과</u> ,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2조(실과의 설치)----- -----재무과, 지적과, <u>사회복지과</u> 환경보호과, 산업과,-----
제9조(사회과) <u>사회과</u> 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제9조(사회복지과) <u>사회복지과</u> 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4(생략)	1~4(현행과 같음)
5. <u>그밖에 사회업무에 관한 사항</u> (신설)	5. <u>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u> 6. 노인·부녀·아동복지법인및 시설의 지도감독 7. 노인·부녀·아동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8. 여성지위 향상및 생활개선 9. 부녀자의 직업보도 10.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11. 부녀아동 상담 및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 12. 부랑아 방지 13.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14. 노인복지대책 및 증진 15. 가정의례준칙 지도 16.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7. 자원봉사자 센터 운영 18.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 11조(가정복지과) (1~14) (생략)	(삭제)
제 12조(산업과) (1~12) (생략)	제 11조(산업과) (현행과 같음)
제 13조(축산과) (1~20) (생략)	제 12조(축산과) (현행과 같음)
제 14조(지역경제과) (1~16) (생략)	제 13조(지역경제과) (현행과 같음)
제 15조(산림과) (1~12) (생략)	제 14조(산림과) (현행과 같음)
제 16조(수산과) (1~9) 생략)	제 15조(수산과) (현행과 같음)
제 17조(건설과) (1~11) (생략)	제 16조(건설과) (현행과 같음)
제 18조(도시과) (1~18) (생략)	제 17조(도시과) (현행과 같음)
제 19조(민방위과) (1~9) (생략)	제 18조(민방위과) (현행과 같음)
제 20조(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② (생략)	제 19조(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② (현행과 같음)